

#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7.14(월)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4. 7. 2.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 다. 회부일자 : 2014. 7. 2
- 라. 상정일자 : 2014. 7. 10. (제21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박송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일부감사 권한을 위임하여 소속 단위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도·감독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 교육지원청의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을 본청으로 이관하여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교육장에게 중학교 이하 소관학교에 대한 행정감사 위임규정 신설(안 제5조1호)
- 교육장에게 위임한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삭제(안 제5조8호)

###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단위 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도·감독업무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일부감사 권한”을 위임하고 교육지원청의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을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 검토의견

- 안 제5조 1호에 교육장에게 중학교 이하 소관학교에 대한 행정감사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행·재정지도·감독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안 제5조 8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한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 경감과 효율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는 2010년 7월 7일 교과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안’에 따라 제출되었던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중학교 이하 소관학교에 대한 행정감사 권한과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 내용을 환원시키는 사항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조직개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수용계획은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수용계획의 수립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 지역실정에 맞는 수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종합감사를 제외한 행정감사를 위임하는 것이 감사기능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변) 감사의 기능에서 예방기능이 중요한데 종합감사를 제외한 행정감사를 위임함으로써 교육지원청에서 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5. 토론요지

가. 찬성 : 최용덕, 박종우, 이강호, 구재용, 박승희, 이영환, 제갈원영 위원  
나. 반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사항

○ 없음

붙임 : 1.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부. 끝.

【붙임1】

##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종합감사를 제외한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  
(단, 중학교·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

제5조제8호가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 자. (생략)</p> <p><u>&lt;신 설&gt;</u></p> <p>    <u>차. (생략)</u></p> <p>2. ~ 7. (생략)</p> <p>8. 공·사립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u>일반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 지원</u> 나. ~ 마. (생략)</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p> <p>1. ----- ----- ----- -----</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    <u>차.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종합감사를 제외한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u></p> <p>    <u>카. (현행 차목과 같음)</u></p> <p>2. ~ 7. (현행과 같음)</p> <p>8. ----- ----- -----</p> <p><u>&lt;삭 제&gt;</u></p> <p>    나. ~ 마. (현행과 같음)</p>

【붙임2】

## 관계법령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